

제 호

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

- 기 관 명:
- 대 표 자:
- 소 재 지:
- 지 정 일:
- 지정번호:
- 업무범위:

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
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
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,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직인